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처에 특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10명) 및 디지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7명(6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특허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4명(4급 또는 5급 4명, 6급 10명) 및 상표·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6급 9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4명(4급 또는 5급 6명, 6급 18명) 및 상표·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7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증원되는 특허 심사 인력 10명(6급 10명)을 신규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식재산정책과·지식재산창출활용과·지식재산인력과
·지역지식재산과 및 지식재산거래과”를 “지식재산정책과·지식재산거
래과·지식재산창출활용과·지식재산인력과 및 지역지식재산과”로 하
고, 같은 조 제7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
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9조제4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술디자인침해범죄에 「사범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에 규정된 범죄(이하 “상표침
해범죄”라 한다)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제9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표침해범죄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2의2. 상표침해범죄에 기술디자인침해범죄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
사

제11조제3항제5호 중 “정보화 추진”을 “정보의 이용 및 활용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11의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제11조제5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지식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4의3.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 기반의 구축·운영

제11조제5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국제특허 출원서류”를 “국제출원 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국제상표 출원서류”를 “국제출원 서류”로 하고, 제8호 중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서”를 “국제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제디자인 출원서류”를 “국제출원 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디자인등록 이의신청서”를 “국제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5.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6.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6의2.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8의2. 「상표법」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10의2.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제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분쟁 대응 및 소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7명(5급 7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7조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9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595”를 “1,606”로, 일반직 계 “1,593”을 “1,604”으로, 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406”을 “41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595”를 “1,606”로, 일반직 계 “1,593”을 “1,604”으로, 공

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366”을 “377”로 한다.
별표 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가. 특허 심사업무	13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10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 특허 심사업무	7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4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5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특허 심사업무	4명 (6급 4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3명 (6급 3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 특허 심사업무	10명 (6급 10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9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식재산정책국) ① (생략)	제8조(지식재산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식재산정책국에 <u>지식재산정책과 · 지식재산창출활용과 · 지식재산인력과 · 지역지식재산과 및 지식재산거래과</u>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u>지식재산정책과 · 지식재산거래과 · 지식재산창출활용과 · 지식재산인력과 및 지역지식재산과</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⑦ (생략)	④ (현행 제7항과 같음)
제9조(지식재산보호협력국) ① ~ ③ (생략)	제9조(지식재산보호협력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u>기술디자인침해범죄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에 규정된 범죄(이하 “상표침해범죄”라 한다)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u>

3. ~ 11. (생략)

⑤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에 규정된 범죄(이하 “상표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2. (생략)

<신설>

3. ~ 10. (생략)

제11조(지식재산정보국) ①·② (생략)

③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지식재산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6. 지식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수사

3. ~ 11. (현행과 같음)

⑤ -----
-----.

1. 상표침해범죄 -----

2. (현행과 같음)

2의2. 상표침해범죄에 기술디자인침해범죄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

3. ~ 10.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식재산정보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 정보의 이용 및 활용
촉진-----

<삭제>

7. ~ 9. (생략) <u>10.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활 용을 위한 시스템 등 기반의 구축·운영</u> 11. (생략) <u><신설></u> <u><신설></u> 12. ~ 27. (생략) ④ (생략) ⑤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5. ~ 11. (생략) <u>12.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의 개 발 및 상용화 촉진</u> <u>1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u>	7. ~ 9. (현행과 같음) <u><삭제></u> 11. (현행과 같음) <u>11의2.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u> <u>11의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 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 구·개발 지원</u> 12. ~ 2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지식재산 분류정보와 다 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u> <u>4의3.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 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 기반 의 구축·운영</u> 5. ~ 11.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	--

<u>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u> 14. (생 략) ⑥·⑦ (생 략) ⑧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4.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5. 우선권증명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6. 지정관청에 의한 국내진입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신 설>	14.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⑧ ----- -----. 1.·2. (현행과 같음) 3. ----- 국 제출원 서류----- 4.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5.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6.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6의2.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절차
---	--

7.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u>국제상표 출원서류의 방식심사</u> 8.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u>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u> <u><신 설></u>	<u>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u> 7. ----- ----- ----- <u>국제출원 서류</u>----- ----- 8. ----- ----- ----- <u>국제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u>----- ----- 8의2. 「상표법」에 따른 <u>국제상표등록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u>
9.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u>국제디자인 출원서류의 방식심사</u> 10.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u>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디자인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u> <u><신 설></u> 11. · 12. (생략)	9. ----- ----- ----- <u>국제출원 서류</u>----- 10. ----- ----- ----- <u>국제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u>----- ----- 10의2.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u>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u> 11. · 12. (현행과 같음)

제27조(한시정원)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

제27조(한시정원) -----

----- 2028년 2월 29
일-----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지식재산처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	·
			<u>1,595</u>	<u>1,606</u>		+11	
일	반	직	·	·	·	·	·
계			<u>1,593</u>	<u>1,604</u>		+11	
		·	·	·	·	·	·
		·	·	·	·	·	·
공	업	주	·	·	·	·	·
·	수	의	·	·	·	·	·
·	해	양	·	·	·	·	·
·	수	산	·	·	·	·	·
·	기	상	·	·	·	·	·
·	보	건	·	·	·	·	·
·	의	료	·	·	·	·	·
·	기	술	·	·	·	·	·
·	주	사	·	·	·	·	·
·	약	무	·	·	·	·	·
·	환	경	·	·	·	·	·
·	주	사	·	·	·	·	·
·	항	공	·	·	·	·	·
·	주	사	·	·	·	·	·
·	시	설	·	·	·	·	·
·	주	사	·	·	·	·	·
·	전	산	·	·	·	·	·
·	주	사	·	·	·	·	·
·	방	송	·	·	·	·	·
·	통	신	·	·	·	·	·
·	주	사	·	·	·	·	·
·	행	정	·	·	·	·	·
·	주	사	·	·	·	·	·
·	또	는	·	·	·	·	·
·	사	서	·	·	·	·	·
·	주	사	·	·	·	·	·

[별표 2]

지식재산청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595</u>	• <u>1,606</u>	+11
일반직 계	• • <u>1,593</u>	• • <u>1,604</u>	+11
•	•	•	
•	•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기 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 사 · 약무주사 · 환경주사 · 항공 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 송통신주사 ·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u>366</u>	<u>377</u>	+11
•	•	•	
•	•	•	